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9 - 41 - 21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9. 8. 23.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해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자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9. 1. 3.)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 를 운영하면서 2019. 1. 3. 기준으로 건의 회원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참고 1> 피심인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수
이용자 정보	(필수)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선택)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휴면회원	상 동		

나.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경로

(1) 개인정보 유출규모

피심인이 낚시용품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 755건이 유출되었다.

<참고 2>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회원	아이디,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755건

(2) 유출 경로

미상의 해커가 2018. 7. 9. 10:23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한 관리자계정으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인지 및 대응

피심인은 2018. 7. 13. 피심인의 쇼핑몰 제작사인 로부터 전화 및 1:1 문의게시판으로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고,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였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2018. 7. 13. 로부터 전화 및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내받고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에 신고하였으나 이용자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개인정보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하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서버로 전송하는 구간(로그인, 회원가입 시)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26.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제2호)’,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제4호)’,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제5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의 ‘지체 없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나, 관련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및 근거가 없는 한 즉시'로 해석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 서버 구축 등의 조치(제3호)’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3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제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제2호)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춘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6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하며,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를 이용한 보안서버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2018. 7. 13. 로부터 전화 및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홈페이지 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를 서버로 전송하는 구간(로그인, 회원가입 시)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미통지	§27조의3①	§14조의2①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28①4호	§15④3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아니한 행위(고시§6③)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 위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해서는 아니 된다.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제1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

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각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 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하.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2호의3	1,000	2,000	3,000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

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조사 시 시정이 완료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 제27조의3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7의3①	1,000만원	없음	없음	1,000만원
§28①4호	1,000만원	없음	500만원	500만원
계				1,500만원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2호의3·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8월 23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김 석 진



위원 허 욱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